

제20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9월 정기) 녹취록

회의명	제20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일시장소	'23. 9. 25(월) 14:00~, 대면 회의
참석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7), 각 안건 담당 과·계장
부의안건	도경찰청 보고3건, 위원회 보고 1건, 심의안건 4건

위원회개회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는 도경찰청 보고 후에 심의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경찰청 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우리 정기 회의 때 와서 인사를 하였는데, 지난달에는 총회의 때문에 불참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참석을 안 하셨대요. 다음 정기회의 때는 반드시 세 분 과장님 오셔가지고 인사는 하고 가도록 한번 말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경찰청 생활안전계입니다. 발표하실 도경찰청 생활안전과 담당 팀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3년 추석 명절 종합 방법 대책

-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팀장)

2. 지역치안협의회 및 등산로 방법시설 전수 조사 결과

-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팀장)

생활안전계 팀장) (보고)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안전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지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9,600만 원의 예산이 다 배정되었는데 전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전수조사 결과는 경찰청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협동 조사해본 결과 CCTV가 97개, 비상벨 46대, 조명 시설이 57대가 설치돼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확정된 CCTV 47대, 비상벨 27대, 조명시설 20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CCTV 50대, 비상벨 19대, 조명시설 37대를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만약에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협의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회에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추석 명절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리 강화 -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팀장)

위원장) 다음은 여성보호계입니다.

여성보호계 팀장) (보고)

위원장)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업무보고(1건)

1. 경찰청 조직재편 관련, 경남청 변경 예정사항
- 자치경찰총괄과 인사권익담당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 업무보고입니다.

경찰청 조직재편 관련, 경남청 변경 예정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인사권익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익담당) (보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모든 게 확정된 단계까지는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것도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경찰청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위원회의 경우는 생안과로 하면 범죄 예방이 주된 기능을 해왔던 것에 반해 예방과 대응을 붙여가지고 좀 현장 투입을 좀 빠르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점을 도모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 예방 대응과를 생활안전과로 볼 것인지,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그렇게 빠져 나갈 것 인지를 모르겠대요.

만약 생활 안전에 해당하는 범죄 예방 대응과가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여청하고 교통 이 두 개의 기능만 우리가 지휘 감독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21년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걸어왔던 방향을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우려가 됩니다.

한규학 위원) 한규학입니다.

여기 조직 개편 관련해서 보니까 본청도 자치경찰이라는 용어를 지방청도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바꿔서 자치경찰이라는 용어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시도 자치경찰 위원장님들께서 대응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일단 위원장 협의회가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 협의회 이름으로 이 절차 위반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사무와 관계되는 조직이나 인원을 조정할 때에는 우리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경찰청 내부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런 안을 마련했거든요. 확인하였을 때는 이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제동을 걸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알려왔던 겁니다.

현재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남아 있고, 특히 지금 이제 경북 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우리 협의회 회장이기도 하고 또 경북지사가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이 부분을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일단 조직 흐름은 개편 흐름은 이렇다는 것을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저도 또 위원장 협의회나 이런 등등의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4건)

【제41호】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장)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안건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나와서 보고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회의자료 10쪽, 안건 제41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21. 5.

3.자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23.5.9.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 제6항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 서면, 원격영상회의 포함한 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 '22. 11월경 성격이 유사한 도 소속 위원회 통·폐합 지시에 따라 '23. 7. 28자에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합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정책자문단 운영 설치 근거 조항을 상기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③, ④항에 '서면 또는 원격영상 방식의 회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상기조례 제9조의 2에 '정책자문단 설치' 항목을 신설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정책자문단의 경우 7. 28. 15차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위원을 구성하였으나 조례 설치 등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경된 사안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기존 정책자문단 구성안에는 위원이 13명이었으나, 위원장인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변경되며,
- 임기는 3년 이내, 1회 연임가능하였으나, 변경안에는 임기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여 기간은 '23. 8. 1.부터 '24. 7. 31.까지가 됩니다.
- 운영은 필요시 개척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되었고,
- 기존에는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명확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정 위원) 고규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 직접 발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고규정 위원) 우리 조례에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화상회의도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상위 조례에 우리 규정이 위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와 운영규정 문구를 통일 하겠습니다.

김진혁 위원) 화상회의든 대면 회의든 어쨌든 회의의 한 방법이 되는 거고 화상회의도 우리가 출석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은 같다고 보면, 서면 회의는 자기 의견을 각자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회의의 성격으로 보면 대면회의하고 화상회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면 회의가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담당) 네 대통령에 따라 원격회의는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서면은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안일 때로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 규정에 저희가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도록 안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고규정 위원님 말씀대로 화상회의는 일단 대면회의와 같다고 보고 운영 규정만 좀 이렇게 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규정 위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 한다면 대통령령에 원격 영상회의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우리 훈련 규정에만 넘어오면 중간 관계 이행 규정 없이 넘어오는 꼴이 되어서요 원격 영상회의 운영 상황에 관한 것은 조례에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주열 위원) 경상남도에 일반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일반 조례가 없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도 조례를 찾아보고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담당)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있어서 지금까지는 그 조례에 근거를 해 운영하였으나 대통령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 안건은 현재 전체 의견만 있고 세부 조문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정기회의가 되든 화상회의든 그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 안건에 대해서 자치경찰 총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위원장) 자치경찰총괄과장,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회의자료 20쪽, 안건 제42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5조 ③, ④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서면 및 원격영상회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운영규정에도 반영하고,

현행 운영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상기 조례 개정(안) 제9조의 2 ‘정책자문단 설치 등’ 신설에 따른 정책자문단 세부 운영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을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의 경우

- 제8조에 ① 경미한 사안 ② 긴급시 서면 또는 원격영상 회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11조는 간사와 서기를 각 자치경찰총괄과장, 서기를 회의운영담당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에는 조항 순서나 용어를 바꾸었을 뿐 전체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자세한 조항은 별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의 경우,
- 제1조~제8조는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 구성, 기능, 회의개최 등 세부 운영규칙에 대한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앞서 41호 심의안건에서 설명드린 정책자문단 구성(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정 위원) 아까 조례 개정 발의안(41호)이 보류가 되어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운영규정도 보류하였다가 나중에 같이 개정해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총괄과장) 네 조례 확정 후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제9조의2 정책자문단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위원회 조례 개정안 제9조의 2는 정책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시행일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고규정 위원) 시행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 전이라도 정책자문단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경과규정을 두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주열 위원) 경상남도 일반 조례에도 이런 ‘정책자문단, 관련 기관, 기구’의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담당)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정책자문단이 조례 개정 전에 기 구성되어 있었고 법적인 설치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부분은 먼저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네 정책자문단 위원 임기가 이미 보장이 돼 있고 의결을 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처럼 규정을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문구에 크게 접촉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규학 위원) 네 저도 우리 사무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어쨌든 이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제정은 앞에 조례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안건 제42호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혁 위원) 저는 동의하고요.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49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규정 제6조 제②항에는 ‘책자문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상 2명 이상이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제6조 ③항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화상회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서면’이라는 말을 삭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면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조문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방금 김진혁 위원께서하신 말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건 제42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제43호) '23년 자치경찰사무수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 안건 제43호, '23년 자치경찰사무수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회의자료 50쪽, 안건 제43호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자치경찰총괄과 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정책과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45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777만원 감액된 145억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 자치경찰총괄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607만원 감액된 32억 4,83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직급보조비 500만원,
대민활동비 15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7만원,
기타직보수 5,0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맞춤형복지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 자치경찰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1,700만원 감액된 112억 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우리동네파수꾼 공모심사 수당 50만원,
가상현실 메타버스 교육플랫폼 운영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도청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 변경·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정 위원) 3회 추경은 돈을 사용하기 위해 도에 더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돌려주는 것인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도 하는데 사용 전에 반납하는 것을 뜻하고, 국고보조금이 10~11월에 내려오는데 정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네 없습니다

위원장) 안건 제43호, ‘23년 자치경찰사무수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네 없습니다

위원장)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제44호)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위원장) 다음으로, 안건 제44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회의자료 56쪽입니다.

안건 제44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8항에 따라 도경찰청장이 추천한 2023년 9월 30일자 승진과 10월 1일자 근속승진 대상자에 대한 승진 임용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임용 대상자는
경사로의 승진 11명과 경장으로의 승진 34명으로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허장영 경장 등 12명은 지난 1월 정기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자이며,
권순채 경장 등 8명은 지난 1월에 실시한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자입니다.

양종혁 순경 등 25명은 10월 1일자 근속 승진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제로 질의응답 진행 후)

한규학 위원) 사전에 확정된 대상자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4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9월 정기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